

신한 청년희망적금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 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징

- 상품명: 신한 청년희망적금
- 상품특징: 저축여력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 및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상품

2. 거래조건

-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아래 1~3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ol style="list-style-type: none">1. <u>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u>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나. 사회복지무요원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2.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요건^{주1)} 을 충족하는 사람<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있거나 근로

	<p>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2)}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함)에 해당되지 않는사람.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p>															
<p>상품유형</p>	<p>자유적립식</p>															
<p>계약기간</p>	<p>24개월</p>															
<p>최저입금금액</p>	<p>최소 1천원 이상, 천원 단위로만 가능</p>															
<p>최고가입금액</p>	<p>월 50만원 이하 / 연 600만원 이하</p>															
<p>기본이자율 (2022.02.10 현재, 세전)</p>	<p>연 5.00% ※ 실제 적용이자율은 통장 인자 내용 또는 비대면 채널에서 계좌 상세조회 시 확인 가능</p>															
<p>우대이자율 (2022.02.10 현재, 세전)</p>	<p>다음의 우대요건 충족시 우대이자율 최고 연 1.00% 적용 가능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392 1451 1342 1989"> <thead> <tr> <th>우대항목</th> <th>적용조건</th> <th>우대 이자율</th> </tr> </thead> <tbody> <tr> <td>신한 인증서</td> <td>신한인증서(신한 Sign) 발급받은 경우</td> <td>연 0.2%</td> </tr> <tr> <td>머니버스</td> <td>신한 마이데이터서비스(머니버스) 가입하고 금융 자산 1개 이상 연결한 경우</td> <td>연 0.3%</td> </tr> <tr> <td>소득이체</td> <td>소득이체 실적(50만원 이상 입금)이 있는 경우</td> <td>연 0.5%</td> </tr> <tr> <td>첫 적금</td> <td>이 상품 가입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이 없었던 경우</td> <td>연 0.5%</td> </tr> </tbody> </table>	우대항목	적용조건	우대 이자율	신한 인증서	신한인증서(신한 Sign) 발급받은 경우	연 0.2%	머니버스	신한 마이데이터서비스(머니버스) 가입하고 금융 자산 1개 이상 연결한 경우	연 0.3%	소득이체	소득이체 실적(50만원 이상 입금)이 있는 경우	연 0.5%	첫 적금	이 상품 가입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이 없었던 경우	연 0.5%
우대항목	적용조건	우대 이자율														
신한 인증서	신한인증서(신한 Sign) 발급받은 경우	연 0.2%														
머니버스	신한 마이데이터서비스(머니버스) 가입하고 금융 자산 1개 이상 연결한 경우	연 0.3%														
소득이체	소득이체 실적(50만원 이상 입금)이 있는 경우	연 0.5%														
첫 적금	이 상품 가입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이 없었던 경우	연 0.5%														

	<p>※ 신한인증서와 머니버스 우대항목은 만기 전전영업일까지 유지시 우대이자율 적용됩니다.</p> <p>※ 머니버스에서 인정되는 금융자산은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전자금융(페이), 할부금융(캐피탈), 보증보험, 통신 업권입니다.</p> <p>※ 소득이체 실적 인정기간은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까지 입니다.</p> <p>※ 소득이체의 경우 신한은행 본인의 유동성 계좌에 건별 50만원 이상 입금시 적용되며, 본인 계좌간 이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p> <p>※ '이 상품 가입 신규직전 1년'은 이 상품 신규일로부터 1년전 ~ 예금신규 전일 입니다. 예) 2022.02.01 가입시 2021.02.01~2022.01.31</p> <p>※ 첫적금 우대대상은 상품가입시 확인 가능합니다.</p>												
<p>최고이자율 (2022.02.10 현재, 세전)</p>	<p>최고 연 6.00%</p> <p>※ 우대 이자율 최고 연 1.00% 적용 시</p>												
<p>원금또는이자 지급방법</p>	<p>만기일시지급식: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 지급</p>												
<p>특별중도해지</p>	<p>아래사유 발생할 경우 특별해지 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기본이자율 적용 및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감면하여 중도해지 가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가입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6.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p>※ 2~6번의 경우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사유발생시 가능함.</p> <p>※ 특별중도해지하여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가입 불가.</p>												
<p>중도해지 이자율 (2022.02.10 현재, 세전)</p>	<p>○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율 적용</p> <p>○ 1개월 미만: 연 0.10%</p> <p>○ 1개월 이상: 기본이자율 X(1-차감율)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연 0.10%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 연 0.10% 적용)</p> <p>※ 차감율(2022.02.10 현재)</p> <table border="1" data-bbox="387 1738 1414 1845"> <thead> <tr> <th>경과기간</th> <th>1개월이상</th> <th>3개월이상</th> <th>6개월이상</th> <th>9개월이상</th> <th>11개월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차감율</td> <td>80%</td> <td>70%</td> <td>30%</td> <td>20%</td> <td>10%</td> </tr> </tbody> </table>	경과기간	1개월이상	3개월이상	6개월이상	9개월이상	11개월이상	차감율	80%	70%	30%	20%	10%
경과기간	1개월이상	3개월이상	6개월이상	9개월이상	11개월이상								
차감율	80%	70%	30%	20%	10%								

<p>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p>	<p>○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text{기본이자율} \times (1 - \text{차감율}) \times \text{경과월수/계약월수} \text{ (단, 최저 연 0.10\%)}$</p>
<p>만기후 이자율 (2022.02.10 현재, 세전)</p>	<p>○ 만기후 1개월 이내: 만기일 당시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적금 연 이자율의 1/2 (단, 최저금리 0.10%) ○ 만기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만기일 당시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적금 연 이자율의 1/4 (단, 최저금리 0.10%) ○ 만기후 6개월 초과: 연 0.10%</p> <p>※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기간 구분하여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자율 적용</p>
<p>만기이자 산출근거</p>	<p>입금건별로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예치일수)에 대하여 이자율로 계산하여 지급</p> <p>1회차 $\text{입금금액} \times \text{이자율} \times \text{예치일수/계약기간}$</p> <p>2회차 $\text{입금금액} \times \text{이자율} \times \text{예치일수/계약기간}$</p> <p>⋮</p> <p>24회차 $\text{입금금액} \times \text{이자율} \times \text{예치일수/계약기간}$</p>

계약해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모바일, 인터넷뱅킹)에서 해지 가능합니다. -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 만기가 휴일인 계좌를 전영업일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됩니다. 단,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나 비과세 미적용 및 저축장려금은 미지급 됩니다. 												
일부해지	불가												
원금또는이자 지급관련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자동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이 원하는 날짜/ 이체주기로 자동이체 등록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른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 시 유의사항] 자동이체일을 말일로 지정할 경우 신청 은행의 자동이체 정책에 따라 익영업일에 입금될 수 있으며, 월 저축한도 제한이 있는 상품의 경우 익월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재예치	불가												
거래제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명의, 계좌분할, 양도 불가 2) 담보제공: 가능(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이내로 가능)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p>단, 1~3 중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자가 『조세특별제한법』 제 91조의 21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2.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특별중도해지 제외)한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 3.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가입시기에 따른 비과세 부적격시 사후처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가입시기</th> <th style="width: 25%;">소득요건 검증</th> <th style="width: 25%;">비과세 검증</th> <th style="width: 25%;">비과세 부적격</th> </tr> </thead> <tbody> <tr> <td>'22.1~6월</td> <td>전전년도 소득</td> <td>직전년도</td> <td>일반과세 전환 (이자소득 과세+만기해지시 장려금지급)</td> </tr> <tr> <td>'22.7~12월</td> <td>직전년도</td> <td>직전년도</td> <td>납입 중지</td> </tr> </tbody> </table> <p>*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으로 부적격시 납입 중지(가입대상 아님)</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내용에 해당될 경우 납입중지 또는 일반과세 전환됩니다. ● 가입대상과 비과세혜택요건이 동일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시기	소득요건 검증	비과세 검증	비과세 부적격	'22.1~6월	전전년도 소득	직전년도	일반과세 전환 (이자소득 과세+만기해지시 장려금지급)	'22.7~12월	직전년도	직전년도	납입 중지
가입시기	소득요건 검증	비과세 검증	비과세 부적격										
'22.1~6월	전전년도 소득	직전년도	일반과세 전환 (이자소득 과세+만기해지시 장려금지급)										
'22.7~12월	직전년도	직전년도	납입 중지										
저축장려금	- 가입대상자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이 적금의 가입자에게 지급												

	<p>1.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해지한 가입자 (만기전 해지 시 저축장려금 지급 불가)</p> <p>2. 이 적금의 계약기간 중 특별중도해지한 가입자</p> <p>- 저축장려금은 아래기준에 따라 진흥원이 지급합니다.</p> <p>다만, 저축장려금은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379 483 1481 797"> <thead> <tr> <th data-bbox="379 483 807 589">기 간</th> <th data-bbox="807 483 1481 589">저축장려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79 589 807 692">가입일 ~ 12개월</td> <td data-bbox="807 589 1481 692">· 적금 납입원금의 2% (최대 12만원)</td> </tr> <tr> <td data-bbox="379 692 807 797">13개월 ~ 24개월</td> <td data-bbox="807 692 1481 797">· 적금 납입원금의 4% (최대 24만원)</td> </tr> </tbody> </table>	기 간	저축장려금	가입일 ~ 12개월	· 적금 납입원금의 2% (최대 12만원)	13개월 ~ 24개월	· 적금 납입원금의 4% (최대 24만원)
기 간	저축장려금						
가입일 ~ 12개월	· 적금 납입원금의 2% (최대 12만원)						
13개월 ~ 24개월	· 적금 납입원금의 4% (최대 24만원)						
<p>위법계약해지권</p>	<p>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p>						
<p>자료열람 요구권</p>	<p>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계약에 관련한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p>						
<p>이용제한 사항</p>	<p>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p>						
<p>예금 해지 시 불이익</p>	<p>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및 이자소득과세, 저축장려금 미지급 (단, 특별중도해지시 기본이자율 적용, 비과세 혜택, 저축장려금 지급)</p>						
<p>휴면예금 및 출연</p>	<p>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p>						
<p>예금자보호여부</p> 	<p>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p>						
<p>수수료</p>	<p>해당없음</p>						
<p>인용출처</p>	<p>해당없음</p>						

3. 유의사항

-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등을 고려하여 가입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신한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해 상세 우대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합니다.
- 이 적금은 가입대상이 제한되며, 신규시점에 가입대상 확인이 진행되어야 상품신규 가능합니다.
- 이 적금은 '신한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법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저축장려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 국가정책 및 관련 법률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만기일 이후 해지(만기일포함)하여야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예외)

본 상품은 신한은행 디지털마케팅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상담센터(1577-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com)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한 청년희망적금 요약 상품설명서

최고이자율	연 6.00%		
	'22.02.10 현재, 세전		
	우대이자율 최고 연 1.00% 포함 (자세한 우대이자율 요건은 상품설명서 참조)		
계약기간	24개월		
가입대상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한 실명의 개인		
가입 및 월납입금액	1천원 이상 월 50만원 이하, 연 600만원 이하		
재예치	X	자동해지	가능
일부해지	X	불가능	
예금담보대출	O	납입액의 95%까지 가능	
예금자보호	O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세제혜택	O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가능	

△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shinhan.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이자율	<p>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p> <p>기본이자율 × (1 - 차감율) ×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 연 0.10%)</p>
	유의사항

※ 만기일 또는 이차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휴면예금이 되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되며,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총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